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정관에 의하여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회)

본 세칙에서 교회라 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산하 각 노회와 각 지교회 또는 교회에 소속된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회 재산)

본 세칙에서 교회 재산이라 함은 교회당 및 그 부지 또는 교회가 소유하는 대지, 전, 답, 임야 등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노회 재산 관리자는 아래와 같다.

1. 총회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본 법인이 지정한다.
2. 각 노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노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3. 각 교회가 사용하는 재산은 해 당회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4. 기타 교회 소속 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단체가 지정하여 본 법인의 인준을 받은 자.

제5조 (등록)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절차)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그 소유 재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등록 신청서(총회 양식) 1부

2. 당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회의록
3. 재산의 등기부 등본(토지 및 건물)

제7조 (수속비용)

전조의 등록 비용은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제8조 (기본재산 처리)

1. 본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은 총회 및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총회 재산 : 총회의 보유재산
 - 2) 등록 재산 : 교회 등의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한 재산
2. 총회 재산의 처분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과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등록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 본 법인은 처분 타당성을 살펴 재석 이사 3분의 2 찬성과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총회 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하여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처분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재산 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교회의 당회회의록
3. 교회의 공동의회 회의록
4. 노회동의서
5. 처분 계획서
6. 재산 감정서(매도, 증여, 교환)

제10조 (기채승인 신청)

본 총회 산하 각 교회가 본 법인에 등록된 총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서(사유를 명시)
2. 교회의 당회, 공동의회 회의록

3. 재산의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4. 금융기관의 확인서
5. 대출금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서
6. 노화동의서

제11조 (보고)

각 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증감 이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본 법인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임원 선정)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1. 총회 공천 이사 12인
단, 유지재단에 재산이 등록된 자여야 한다.
2. 이사회가 추천한 2인
3. 총회 총무 1인

제13조 (사무국)

사무국은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14조 (직원)

1. 사무국에는 업무에 따라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3. 부장과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서면 결의)

이사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이사가 정식 회의에 화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비용부담)

본 유지재단이나 당시 그 직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관련 각 소송의 비용을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 (개정)

이 운영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